라비움 한강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1-49번지 일원에 공급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마포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도시형생활주택)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2025.06.30.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 제1항 및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2호 내지 제16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공고문에 게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500세대 이하 건축물로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 등급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당사 대표전화(☎1533-1195) 또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lavieum.com)를 통해 분양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진행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08. 입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2.08.) 현재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및 법인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청약Home)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타입별 1인당 1세대(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타입별 2세대(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세대 분양 :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세대은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본 건축물의 해당주택건설지역인 마포구는 투기과열지구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1항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주택법」 제64조1항1호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1항 별표3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주택법」 및 관계법령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마포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및 소재지 주무관청 직접 제출 등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인지세(가산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 균등 납부 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분양계약과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 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과-12967호(2025.11.26.)]로 분양승인
■ 본 건축물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3-도시환경시행인가-1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1-49번지 일원
■ 신탁업자(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시행위탁자 : ㈜디오로디엔씨 / 시공사 :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2,897.20㎡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42,459.04㎡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9,751.13㎡
- 주차대수 : 총 281대 중 도시형생활주택 128대
- 공급대상 : 지하7층 ~ 지상 38층, 1개동 중 도시형생활주택 198세대 (임대 33세대 포함) 중 공급대상 165세대

구 분	용 도
지하 7층 ~ 지하 1층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기전실, 방재실
지상 1층 ~ 지상 8층	주민공동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상 9층 ~ 지상 26층	도시형생활주택, 피난안전구역
지상 27층 ~ 지상 38층	오피스텔(펜트하우스 포함), 스카이라운지
옥탑1층	옥상정원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본 건축물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 5의2 및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임.
-「건축법」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Ⅶ-0.197g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참조)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Ⅶ)등급 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0.197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 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3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타입 (약식표기)	공급세대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2025950078	01	40A	81	40.8900	23.6679	64.5579	29.4584	94.0163	6.2487
	02	40B	16	40.2000	23.3724	63.5724	28.9610	92.5334	6.1431
	03	42	36	42.0700	24.1275	66.1975	30.3082	96.5057	6.4289
	04	45	16	45.0400	25.6656	70.7056	32.4478	103.1534	6.8828
	05	57	16	57.4300	34.2113	91.6413	41.3739	133.0152	8.7762

※ 임대세대 : 33세대 (40A타입-7세대, 40B타입-6세대, 42타입-8세대, 45타입-6세대, 57타입-6세대)는 별도 공급예정
※ 주차장은 총 281대(오피스텔(업무시설):108대,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 : 128대, 근린생활시설 23대, 사회복지시설: 22대 포함)로 설계되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하여 넷째짜리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별 공급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의 합산 면적이 계약면적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타입 표시 안내

전용면적	40.8900	40.2000	42.0700	45.0400	57.4300
(약식표기)	40A	40B	42	45	5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약식표기)	라인	층 구분	공급 세대	공급금액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0%) 2026.03.10	2회(10%) 2026.07.10	3회(10%) 2027.01.11	4회(10%) 2027.08.10	5회(10%) 2028.02.10	6회(10%) 2028.08.10	입주시
40A	2,3	4층	2	773,674,200	565,325,800	1,339,000,000	66,950,000	133,900,000	133,900,000	133,900,000	133,900,000	133,900,000	133,900,000	468,650,000
	2,3	5층	2	783,496,800	572,503,200	1,356,000,000	67,800,000	135,600,000	135,600,000	135,600,000	135,600,000	135,600,000	135,600,000	474,600,000
	2,3	6층	2	793,897,200	580,102,800	1,374,000,000	68,7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480,900,000
	2,3	7층	2	803,719,800	587,280,200	1,391,000,000	69,550,000	139,100,000	139,100,000	139,100,000	139,100,000	139,100,000	139,100,000	486,850,000
	2,3	8층	2	813,542,400	594,457,600	1,408,000,000	70,400,000	140,800,000	140,800,000	140,800,000	140,800,000	140,800,000	140,800,000	492,800,000
	2,3	9층	2	823,942,800	602,057,200	1,426,000,000	71,300,000	142,600,000	142,600,000	142,600,000	142,600,000	142,600,000	142,600,000	499,100,000
	2,3	10층	2	833,765,400	609,234,600	1,443,000,000	72,150,000	144,300,000	144,300,000	144,300,000	144,300,000	144,300,000	144,300,000	505,050,000
	2,3	11층	2	843,588,000	616,412,000	1,460,000,000	73,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511,000,000
	2	12층	1	853,410,600	623,589,400	1,477,000,000	73,850,000	147,700,000	147,700,000	147,700,000	147,700,000	147,700,000	147,700,000	516,950,000
	2,3	13층	2	863,811,000	631,189,000	1,495,000,000	74,750,000	149,500,000	149,500,000	149,500,000	149,500,000	149,500,000	149,500,000	523,250,000
	2,3	14층	2	873,633,600	638,366,400	1,512,000,000	75,600,000	151,200,000	151,200,000	151,200,000	151,200,000	151,200,000	151,200,000	529,200,000
	2,3	15층	2	883,456,200	645,543,800	1,529,000,000	76,450,000	152,900,000	152,900,000	152,900,000	152,900,000	152,900,000	152,900,000	535,150,000
	2,3	16층	2	893,856,600	653,143,400	1,547,000,000	77,350,000	154,700,000	154,700,000	154,700,000	154,700,000	154,700,000	154,700,000	541,450,000
	2,3	17층	2	903,679,200	660,320,800	1,564,000,000	78,200,000	156,400,000	156,400,000	156,400,000	156,400,000	156,400,000	156,400,000	547,400,000
	2,3	18층	2	913,501,800	667,498,200	1,581,000,000	79,050,000	158,100,000	158,100,000	158,100,000	158,100,000	158,100,000	158,100,000	553,350,000
	2,3	19층	2	923,902,200	675,097,800	1,599,000,000	79,95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559,650,000
	2,3	20~23층	6	933,724,800	682,275,200	1,616,000,000	80,800,000	161,600,000	161,600,000	161,600,000	161,600,000	161,600,000	161,600,000	565,600,000
	2	24~26층	3	982,260,000	717,740,000	1,700,000,000	85,000,000	170,000,000	170,000,000	170,000,000	170,000,000	170,000,000	170,000,000	595,000,000
	3	24층.26층	2	982,260,000	717,740,000	1,700,000,000	85,000,000	170,000,000	170,000,000	170,000,000	170,000,000	170,000,000	170,000,000	595,000,000
	6,7	4층	2	790,430,400	577,569,600	1,368,000,000	68,4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478,800,000
	7	5층	1	790,430,400	577,569,600	1,368,000,000	68,4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478,800,000
	6	6층	1	790,430,400	577,569,600	1,368,000,000	68,4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478,800,000
	6,7	7층	2	823,942,800	602,057,200	1,426,000,000	71,300,000	142,600,000	142,600,000	142,600,000	142,600,000	142,600,000	142,600,000	499,100,000
	7	8층	1	823,942,800	602,057,200	1,426,000,000	71,300,000	142,600,000	142,600,000	142,600,000	142,600,000	142,600,000	142,600,000	499,100,000
	6,7	9층	2	837,232,200	611,767,800	1,449,000,000	72,450,000	144,900,000	144,900,000	144,900,000	144,900,000	144,900,000	144,900,000	507,150,000
	6,7	10~11층	4	900,212,400	657,787,600	1,558,000,000	77,900,000	155,800,000	155,800,000	155,800,000	155,800,000	155,800,000	155,800,000	545,300,000
	6	12층, 14~16층	4	975,904,200	713,095,800	1,689,000,000	84,45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591,150,000
	7	12~16층	5	975,904,200	713,095,800	1,689,000,000	84,45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591,150,000
	6,7	17~19층	6	987,460,200	721,539,800	1,709,000,000	85,450,000	170,900,000	170,900,000	170,900,000	170,900,000	170,900,000	170,900,000	598,150,000
	6,7	20~22층	6	1,008,261,000	736,739,000	1,745,000,000	87,250,000	174,500,000	174,500,000	174,500,000	174,500,000	174,500,000	174,500,000	610,750,000

	6	24~25층	2	1,025,595,000	749,405,000	1,775,000,000	88,750,000	177,500,000	177,500,000	177,500,000	177,500,000	177,500,000	177,500,000	621,250,000
	7	24~26층	3	1,025,595,000	749,405,000	1,775,000,000	88,750,000	177,500,000	177,500,000	177,500,000	177,500,000	177,500,000	177,500,000	621,250,000
40B	9	4~6층	3	710,694,000	519,306,000	1,230,000,000	61,500,000	123,000,000	123,000,000	123,000,000	123,000,000	123,000,000	123,000,000	430,500,000
	9	7~8층	2	725,716,800	530,283,200	1,256,000,000	62,800,000	125,600,000	125,600,000	125,600,000	125,600,000	125,600,000	125,600,000	439,600,000
	9	9층	1	818,742,600	598,257,400	1,417,000,000	70,850,000	141,700,000	141,700,000	141,700,000	141,700,000	141,700,000	141,700,000	495,950,000
	9	12층~14층, 16층	4	960,303,600	701,696,400	1,662,000,000	83,100,000	166,200,000	166,200,000	166,200,000	166,200,000	166,200,000	166,200,000	581,700,000
	9	19층	1	971,859,600	710,140,400	1,682,000,000	84,100,000	168,200,000	168,200,000	168,200,000	168,200,000	168,200,000	168,200,000	588,700,000
	9	20~22층	3	990,927,000	724,073,000	1,715,000,000	85,750,000	171,500,000	171,500,000	171,500,000	171,500,000	171,500,000	171,500,000	600,250,000
	9	24층,26층	2	1,005,949,800	735,050,200	1,741,000,000	87,050,000	174,100,000	174,100,000	174,100,000	174,100,000	174,100,000	174,100,000	609,350,000
42	4	4층	1	795,630,600	581,369,400	1,377,000,000	68,850,000	137,700,000	137,700,000	137,700,000	137,700,000	137,700,000	137,700,000	481,950,000
	4	5층	1	805,453,200	588,546,800	1,394,000,000	69,700,000	139,400,000	139,400,000	139,400,000	139,400,000	139,400,000	139,400,000	487,900,000
	4	6층	1	815,853,600	596,146,400	1,412,000,000	70,600,000	141,200,000	141,200,000	141,200,000	141,200,000	141,200,000	141,200,000	494,200,000
	4	7층	1	826,254,000	603,746,000	1,430,000,000	71,5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500,500,000
	4	8층	1	836,654,400	611,345,600	1,448,000,000	72,400,000	144,800,000	144,800,000	144,800,000	144,800,000	144,800,000	144,800,000	506,800,000
	4	9층	1	846,477,000	618,523,000	1,465,000,000	73,25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512,750,000
	4	11층	1	867,277,800	633,722,200	1,501,000,000	75,050,000	150,100,000	150,100,000	150,100,000	150,100,000	150,100,000	150,100,000	525,350,000
	4	12층	1	877,678,200	641,321,800	1,519,000,000	75,950,000	151,900,000	151,900,000	151,900,000	151,900,000	151,900,000	151,900,000	531,650,000
	4	13층	1	887,500,800	648,499,200	1,536,000,000	76,800,000	153,600,000	153,600,000	153,600,000	153,600,000	153,600,000	153,600,000	537,600,000
	4	14층	1	897,901,200	656,098,800	1,554,000,000	77,700,000	155,400,000	155,400,000	155,400,000	155,400,000	155,400,000	155,400,000	543,900,000
	4	15층	1	908,301,600	663,698,400	1,572,000,000	78,600,000	157,200,000	157,200,000	157,200,000	157,200,000	157,200,000	157,200,000	550,200,000
	4	17층	1	928,524,600	678,475,400	1,607,000,000	80,350,000	160,700,000	160,700,000	160,700,000	160,700,000	160,700,000	160,700,000	562,450,000
	4	18층	1	938,925,000	686,075,000	1,625,000,000	81,250,000	162,500,000	162,500,000	162,500,000	162,500,000	162,500,000	162,500,000	568,750,000
	4	19층	1	949,325,400	693,674,600	1,643,000,000	82,150,000	164,300,000	164,300,000	164,300,000	164,300,000	164,300,000	164,300,000	575,050,000
	4	20~22층	3	959,148,000	700,852,000	1,660,000,000	83,000,000	166,000,000	166,000,000	166,000,000	166,000,000	166,000,000	166,000,000	581,000,000
	4	24~25층	2	1,009,416,600	737,583,400	1,747,000,000	87,350,000	174,700,000	174,700,000	174,700,000	174,700,000	174,700,000	174,700,000	611,450,000
	5	4~5층	2	821,053,800	599,946,200	1,421,000,000	71,050,000	142,100,000	142,100,000	142,100,000	142,100,000	142,100,000	142,100,000	497,350,000
	5	8층	1	855,144,000	624,856,000	1,480,000,000	74,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518,000,000
	5	9층	1	869,011,200	634,988,800	1,504,000,000	75,200,000	150,400,000	150,400,000	150,400,000	150,400,000	150,400,000	150,400,000	526,400,000
	5	10~11층	2	934,302,600	682,697,400	1,617,000,000	80,850,000	161,700,000	161,700,000	161,700,000	161,700,000	161,700,000	161,700,000	565,950,000
	5	12층~14층, 16층	4	1,007,683,200	736,316,800	1,744,000,000	87,200,000	174,400,000	174,400,000	174,400,000	174,400,000	174,400,000	174,400,000	610,400,000
	5	17~18층	2	1,021,550,400	746,449,600	1,768,000,000	88,400,000	176,800,000	176,800,000	176,800,000	176,800,000	176,800,000	176,800,000	618,800,000
	5	21~22층	2	1,037,151,000	757,849,000	1,795,000,000	89,750,000	179,500,000	179,500,000	179,500,000	179,500,000	179,500,000	179,500,000	628,250,000
	5	24~26층	3	1,054,485,000	770,515,000	1,825,000,000	91,250,000	182,500,000	182,500,000	182,500,000	182,500,000	182,500,000	182,500,000	638,750,000
45	8	4~6층	3	886,923,000	648,077,000	1,535,000,000	76,750,000	153,500,000	153,500,000	153,500,000	153,500,000	153,500,000	153,500,000	537,250,000
	8	12~16층	5	1,092,042,000	797,958,000	1,890,000,000	94,500,000	189,000,000	189,000,000	189,000,000	189,000,000	189,000,000	189,000,000	661,500,000
	8	17~18층	2	1,105,331,400	807,668,600	1,913,000,000	95,650,000	191,300,000	191,300,000	191,300,000	191,300,000	191,300,000	191,300,000	669,550,000
	8	20~22층	3	1,118,620,800	817,379,200	1,936,000,000	96,800,000	193,600,000	193,600,000	193,600,000	193,600,000	193,600,000	193,600,000	677,600,000
	8	24~26층	3	1,135,954,800	830,045,200	1,966,000,000	98,300,000	196,600,000	196,600,000	196,600,000	196,600,000	196,600,000	196,600,000	688,100,000
57	1	4층, 6층	2	1,031,950,800	754,049,200	1,786,000,000	89,300,000	178,600,000	178,600,000	178,600,000	178,600,000	178,600,000	178,600,000	625,100,000
	1	7~8층	2	1,067,774,400	780,225,600	1,848,000,000	92,400,000	184,800,000	184,800,000	184,800,000	184,800,000	184,800,000	184,800,000	646,800,000
	1	9~11층	3	1,109,376,000	810,624,000	1,920,000,000	96,000,000	192,000,000	192,000,000	192,000,000	192,000,000	192,000,000	192,000,000	672,000,000

1	12층,15층	2	1,124,976,600	822,023,400	1,947,000,000	97,350,000	194,700,000	194,700,000	194,700,000	194,700,000	194,700,000	194,700,000	681,450,000
1	17~19층	3	1,139,999,400	833,000,600	1,973,000,000	98,650,000	197,300,000	197,300,000	197,300,000	197,300,000	197,300,000	197,300,000	690,550,000
1	20~22층	3	1,155,600,000	844,400,000	2,000,000,000	100,000,000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700,000,000
1	26층	1	1,194,312,600	872,687,400	2,067,000,000	103,35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723,450,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세대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되며(공급금액에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비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청약 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견본주택은 42타입이 설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40A,40B,45,57)은 분양안내문, 카탈로그 등의 CG 및 건축허가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환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비용, 취득세, 추가선택품목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유상옵션 품목이 합산되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이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민공동시설, 관리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 위치 지정이나 구획 구분 및 구분 등기 등은 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공정에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을"(외국인 포함)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및 소재지 주무관청 직접 제출 등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의 변경, 정보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개인신용등급, 다주택 계약 등)로 인하여 대출조건과 취급 등이 불가(제한) 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33세대)는 40A타입-506호,607호,806호,1203호,1306호,2503호,2606호 / 40B타입-1009호,1109호,1509호,1709호,1809호,2509호 / 42타입 – 605호, 705호, 1004호,1505호,1604호,1905호,2005호,2604호 / 45타입 – 708호,808호,908호,1008호,1108호,1908호 / 57타입 – 501호,1301호,1401호,1601호,2401호,2501호 입니다.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은행창구- 은행 영업시간 *PC/모바일 청약홈- 09:00~17:30	2025년 12월 23일(화) 16:00 이후	2026년 01월 05일(월) ~ 2026년 01월 07일(수) (10:00~17:00)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라비움 한강 청담 갤러리 견본주택**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19)

※ 당첨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해 전화로는 확인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방법 및 절차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주소,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 안내

구 분	청약신청금	내 용
모든 타입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청약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및 법인 등을 제외하고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2">일반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td></tr>
<tr><td>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h></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청약신청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1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td></tr>
<tr><td>법인신청시</td><td colspan="3">- 청약신청서
-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td></tr>
</table>

※ 접수가능은행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왼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공급자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2025.12.08.)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포함)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당 타입별 1세대(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타입별 2세대(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KB국민인증서·토스인증서·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 가능하며, 청약전에 청약통장 취급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토스인증서·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호수를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5년 12월 23일(화요일)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5일 이내 당첨발표한 단지에 한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세대 결정방법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정당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신청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 영업일에 자동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소	계약금 납부
2026년 01월 05일(월) ~ 2026년 01월 07일(수)	10:00~17:00	라비움 한강 청담 갤러리 견본주택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19)	계약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분양대금,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국민은행	291601-04-272358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입금세대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1001호 "당첨자 홍길동" →1001홍길동)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국민은행	581201-01-438951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분양대금,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서로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신탁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호수 및 수분양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위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예:"1001호" 홍길동 →1001홍길동)
-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대금 중 계약금,중도금에 한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층·호실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 시 (배우자 포함)	• 계약금 입금확인서류(무통장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 재외동포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거주자 우선분양 당첨자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인감도장 (본인서명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가능) ※ 외국인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2부 (용도: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본인발급용), 설계변경동의용(본인발급용)) ※ 외국인의 경우 : 본국 대사/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명증명서
법인 신청 시	• 계약금 입금확인서류(무통장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2부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설계변경 동의용)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 ※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부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부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
제 3자 대리 신청 시 추가 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 계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견본주택 내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및 인장
공통 사항	1. 인지세 납부확인증(전자수입인지)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35만원) (단,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해당 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 납부해야 함.)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이 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 상기 증명서류 외 별도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사업부지 인근 기입주 시설 및 신축으로 인한 건축시행,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사업부지, 평면도, 배치도, 견본주택 내 설치된 모형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입주시기와 타 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마포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

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대출관련 대출기관과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고지 될 예정입니다.
- 대출 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중도금 대출 기관은 분양사업자가 선정하며, 대출조건(금리 등) 및 금융기관 선정 등과 관련하여 계약자는 관여할 수 없으니 이를 명확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1~4회차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5,6회차 중도금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할 수 있음.)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단,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거나 대출불가로 인한 자납 또는 입주 지정 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시행위탁자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그 금액을 시행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일의 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5%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정책(대출제한 등) 및 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불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대출 금융기관 선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추후 안내(알선)하는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선정은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연체 시 연체료 발생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복수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 전액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준공 후 담보대출 전환 시 DSR 적용에 따라 개인별 대출 불가 또는 대출 한도는 축소가 될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계약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중도금 대출 혹은 본인 자금 조달 시에는 별도의 이자 지원 적용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당 대출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상환 약정일 이후, 미상환 시 개인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 및 다세대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금융기관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IV 기타 계약자 안내

■ 분양권 전매에 관한 사항
- 본 건물의 해당주택건설지역인 마포구는 투기과열지구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1항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주택법」 제64조1항1호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1항 별표3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전매가 금지 됩니다. (단, 향후「주택법」 및 관계법령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각 1/2씩 분담하여 종이문서용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 체결 시 승계인(전매 매도인)과 수계인(전매 매수인)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정부수입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해당 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면제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제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사전방문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은 2029년 03월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의 입주시기와 오피스텔(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V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1. 인테리어 옵션 선택품목

■ 일반가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옵션형 (유상)						비고
	기본품목	옵션품목	공급금액					
			40A	40B	42	45	57	
신발장	LPM	PET+유리도어	990,000	1,320,000	1,210,000	1,320,000	990,000	-
드레스룸 도어	가구여닫이 목도어	포켓 슬라이딩도어	440,000		330,000	220,000		-
침실 붙박이장	미적용	PET마감					5,170,000	57타입만 해당
세탁실	미적용	가구도어	550,000	550,000	550,000	550,000		-
대피공간	미적용	가구도어+침실벽판넬 (대피공간과연결부위)	770,000	770,000	770,000	770,000		-
보일러실	미적용	가구도어 +가벽추가	550,000		550,000		550,000	-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기본형 봉타입 시스템선반	벽판넬 조명 선반 + 서랍장	2,750,000	1,650,000	2,640,000	1,100,000		-

■ 주방가구 특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 (무상)	옵션형 (유상)						비고
	기본품목	옵션품목	공급금액					
			40A	40B	42	45	57	
주방가구	국산주방가구(LPM마감)	수입 주방가구(라미네이트)	19,690,000	20,680,000	22,880,000	19,250,000	27,720,000	아일랜드 목재상판은 42,45,57 타입만 해당됨
주방벽	일반 타일(600x300)	세라믹타일	770,000	1,100,000			2,860,000	-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	세라믹타일	7,040,000	7,590,000	10,890,000	7,260,000	6,820,000	-

■ 창 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 (무상)	옵션형 (유상)						비고
	기본품목	옵션품목	공급금액					
			40A	40B	42	45	57	
거실/침실 벽	거실측 : 건식벽(벽판넬)+목문 침실측 : 벽지마감	유리슬라이딩도어	550,000	660,000	1,210,000	660,000		57타입 침실측 유리 슬라이딩도어 미적용
알파룸	미적용	옵션1 : 목문+벽체				440,000		-
		옵션2 : 슬라이딩 유리도어				440,000		
욕실	ABS 도어	유리도어	1,760,000	1,760,000	1,760,000	1,430,000	880,000	-

■ 바닥, 벽마감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 (무상)	옵션형 (유상)						비고
	기본품목	옵션품목	공급금액					
			40A	40B	42	45	57	
바닥재 (거실, 주방, 침실)	마루바닥재	유럽산타일	5,390,000	5,390,000	6,050,000	5,720,000	7,260,000	57타입 침실 내부 바닥타일 미적용
벽 마감재 (거실,복도,침실)	실크벽지	벽판넬	5,170,000	5,830,000	5,280,000	9,130,000	5,170,000	57타입 침실 내부 판넬 미적용

■ 욕실특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 (무상)	옵션형 (유상)						비고
	기본품목	옵션품목	공급금액					
			40A	40B	42	45	57	
세면대 상판	인조대리석(MMA)	세라믹타일	3,080,000	3,300,000	3,190,000	2,090,000	3,190,000	-
욕실벽 타일	수입산 타일(600x300)	유럽산 타일(600x600)	2,530,000	2,530,000	2,860,000	3,080,000	2,310,000	-
욕실바닥타일	수입산 타일(300x300)	유럽산 타일(600x600)	990,000	990,000	990,000	1,320,000	1,100,000	-

■ 설비특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 (무상)	옵션형 (유상)						
	기본품목	옵션품목	공급금액					비고
			40A	40B	42	45	57	
설비 특화	기본형 도기,수전,액세서리류 (일반비데 포함)	고급형 도기,수전,액세서리류 (일체형 비데 포함)	6,380,000	6,380,000	6,380,000	6,380,000	6,380,000	욕실 도기/수전/액세서리 및 주방수전

■ 홈네트워크 특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 (무상)	옵션형 (유상)						비고
	기본품목	옵션품목	공급금액					
			40A	40B	42	45	57	
월패드	10인치	13인치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

※ 인테리어 옵션 유의사항

- 세대 기본/옵션 마감자재 및 제품,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성능 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시공 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 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세대인 40A, 40B, 45, 57은 건립 세대인 42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 형태 및 공간 크기에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달로그 등)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본공사 시 세대내 바닥 단차, 천장고, 우물천장의 높이는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본 공사 시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커튼박스 내부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옵션 선택 시 각 공간별 크기는 마감재, 가구 설치 등으로 실 시공 시 안목치수가 도면과 경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가 시공되는 부위의 바닥, 벽,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옵션 미선택 시 신발장의 가구도어, 가구몸통, 디자인선반, 하드웨어, 악세사리는 기본마감으로 변경되며, 신발장 하부조명과 내부빗각선반은 삭제됩니다.
- 타일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요철에 의한 줄눈 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으며, 메지와 실리콘의 색상, 규격, 사양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리도어는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평형별 구동방식, 사양, 규격이 상이하며, 가구의 규격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리 슬라이딩 도어 옵션은 천장틀이 보강되어 금속틀의 형태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유리도어 옵션품목은 평형별로 구동방식(여닫이, 슬라이드)이 상이하며, 욕실별 도어개수(40A,40B,42,45:2개, 57:1개)도 평형별로 상이합니다..
-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벽판넬 조명선반과 서랍장이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 시 시스템선반은 봉타입으로 설치되며, 벽판넬 조명선반과 서랍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선택(기본/옵션)에 따라 가구의 형태와 규격,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 표면재의 무늬,패턴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의 기본과 옵션품목은 상판두께가 상이합니다.
- 주방가구가 시공되는 부위의 바닥은 일부 난방 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가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가구변형을 막기위해 가구도어에 보강대 설치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벽면과 접하는 아일랜드 상판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아일랜드 상판이 분할 시공될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일랜드 목재상판에 보강대 설치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냉장고 설치 시 견본주택에 전시된 가전과 상이하게 돌출될 수 있으며, 배치가 불가할 수있으니 반드시 본인 소유의 가전제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오븐, 김치냉장고, 콤비냉장고 미선택시 기본수납장이 동일규격으로 시공됩니다.
- 모든 옵션 가구용 조명(현관장, 욕실장, 주방가구, 드레스룸가구)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용 조명이 포함된 옵션 품목 미선택 시 해당 조명은 미설치됩니다.
- 본공사 시 기본/옵션 적용된 벽판넬의 모서리 마감, 나눔부위, 규격과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옵션 미선택 시 욕실1은 가로600x세로300의 벽용 타일, 300x300의 바닥용 타일이 시공됩니다.
- 상기 내용을 제외한 세대 관련 상세한 안내는 견본주택 내 세대 POP와 모형, CG, 모집공고와 계약서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미선택 시 욕실바닥, 벽타일과 욕실문, 세면대상판은 기본마감으로 변경되며, 욕실장 하부조명은 삭제됩니다.
- 욕실타일의 나눔부위에 따라 평활도가 고르지 않을 수 있으며, 패턴나눔(메지) 부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단차 부위는 인조석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며, 벽타일 시공 시 PVC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의 바닥, 벽, 상판의 재료분리대의 자재, 형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2 타입의 세탁실의 바닥은 욕실의 습이 닿지 않게 턱을 올려 시공됩니다.
- 옵션형 세탁기/건조기는 직렬로 설치하며, 입주자의 세탁기/건조기 설치 시 견본주택에 전시된가전과 상이하게 돌출될 수 있으며,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소유의 가전제품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면대 상판 옵션은 분할 시공될 수 있으며 모서리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특화 옵션에는 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및 고급형 수전, 고급형 액세서리(휴지걸이,선반)가 설치되며, 고급형 주방 싱크수전도 포함됩니다.

• 설비특화 옵션 시, 샤워수전은 벽체 매립형으로 설치되며 기본형(노출형)과 마감이 상이합니다.
• 설비특화 옵션 미선택시, 분리형 비데가 설치되며 기본형 도기, 수전, 액세서리(휴지걸이,선반)가 설치됩니다.

■ 인테리어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인테리어 옵션	국민은행	581201-01-438951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세대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501호"홍길동"→ 0501홍길동)

■ 인테리어 옵션 납부 일정 안내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 고
	계약시	2026.03.10	입주지정일	
인테리어 옵션 납부일정 및 비율	10%	10%	80%	-

2. 가전옵션

■ 가전기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 (무상)	옵션형 (유상)							비고
	기본품목	옵션품목	제조사	공급금액					
				40A	40B	42	45	57	
주방가전	기본 수납장	전기오븐	삼성	660,000	660,000	660,000	660,000	660,000	-
	냉장고장만 설치	콤비냉장고 (가구도어마감)	LG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
세탁실	미적용	세탁기+건조기 (직렬)	삼성	3,850,000	3,850,000	3,850,000	3,850,000	3,850,000	-
레인지후드	기본형 후드 (국산 독립형)	고급형 후드 (외산 독립형)	시리우스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

※ 가전옵션 유의사항
• 옵션 가전기기 미선택 시 3구전기쿡탑과 기본형 후드만 설치됩니다.
• 콤비냉장고 옵션 설치 시 가구도어로 마감되며, 옵션 미선택시 냉장고장(상부장 및 측면키큰장)만 설치되며, 냉장고의 종류에 따라 돌출 또는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옵션품목 선택시 각 실별 도어 개폐방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추후 옵션계약시 확인가능)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 (무상)	옵션형 (유상)							비고
	기본품목	옵션품목	제조사	공급금액					
				40A	40B	42	45	57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2개소 (거실,침실)	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	삼성	6,050,000	6,050,000	6,160,000	6,380,000	6,600,000	일반무풍형 (공기청정기능 없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난방 겸용제품(공기청정기능 없음)으로,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타입별, 실별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옵션선택에 따른 배관 길이 및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유상옵션 미 선택시 설치되는 기본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은 천장형이므로 스탠드형 또는 벽걸이형 제품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은 2개소(거실,침실)에 시공됨에 따라, 이후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활용 가능하나 타 제조사는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시공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 시점에 생산되는 모델로 설치되므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능하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이 천장에서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옵션 선택 완료 후 계약자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층별 공용 실외기를 사용함에 따라 전력분배시스템으로 설치되며, 사용량(대기전력 포함) 및 관리규약 따라 전기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개별 설치(옵션 미선택세대 포함)할 경우, 공용 실외기와 동일 제조사의 호환가능한 제품으로 실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공용 실외기 사용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층별 공용 실외기실이 협소하여 개별 실외기 설치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설치(옵션 미선택세대 포함)하는 경우 별도로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공용 실외기를 사용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내기를 설치하거나 교체 및 수리하는 경우, 해당 층은 에어컨 가동이 중단됩니다.

■ 가전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가전옵션	국민은행	581201-01-438951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501호"홍길동"→ 0501홍길동)

■ 가전 옵션 납부 일정 안내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 고
	계약시	2026.03.10	입주지정일	
가전옵션 납부일정 및 비율	10%	10%	80%	-

VI 기타 유의사항 (※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여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변경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분양광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승인된 도면 및 변경예정인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시 사업부지의 일부 또는 전체가 합병·합필이 되어 지번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인지세의 경우 인지세법에 따라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단위실상으로 수입인지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총 대지지분을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을 원칙으로 하여 소수점 4째자리까지 기재하였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벽체, 조적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시행사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 구조/성능/마감/상품/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 점 양지하길 바랍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경미한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주동,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에 설치되는 로고의 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및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공용시설 등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단위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및 난간 형태 및 색상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입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조경면적 등),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총 대지지분 면적을 타입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고려한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경미한 범위내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외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승인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십시오.
-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타입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42타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42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가구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성능 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시공 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 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하드웨어(힌지,레일,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져의 위치, 통합스위치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 및 안내된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보일러 등은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제품으로, 본공사 시 일반형 제품(공기청정기능 없음)으로 설치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환기 컨트롤러,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류 및 스위치류), 월패드, 스마트디스플레이스위치(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으로,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가스식 설치 불가)
- 견본주택 모형의 경관 조명 및 입출차 차단기는 연출된 것으로 실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는 본공사시 동등이상 다른 제품이 설치될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주동계획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의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동별,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 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단위세대 및 특정단위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단위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기부채납시설) 및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기 실외기와 환기시스템이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단위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단위세대 등 공동개방공간을 사용하는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세대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D/A(설비환기구),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함(재활용 보관소 포함)은 1개소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단위세대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인접 단위세대은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단위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고층 건물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며,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사하셔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및 소방준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계획된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단위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등급 Ⅶ-0.197g 입니다.
-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외벽부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주동 측벽 문양,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동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마포대로측의 측벽 조명 및 옥탑구조물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에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의 폭, 경계석 위치, 형태, 회차동선, 회전반경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내부에는 레벨 차이로 옹벽, 조경석 쌓기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구간, 높이, 형태,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계단과 경사로의 레벨, 형태, 마감, 난간 높이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 (설비 환기구) 의 노출이 있으며, 보행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1층에 공개공지 1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며,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대지안의 공지 구간으로 외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성되는 공개공지의 디자인, 식재 배치, 시설물, 포장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 형태, 색채, 마감, 규격,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은 지상 1,4층, 지붕층 옥상에 조경 식재, 시설, 포장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과 인접한 단위세대가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시설은 공용시설로 개별단위세대는 점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의 수종, 규격, 식재 위치는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단위세대에 일조와 조망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차량 활동구역에는 소방구조활동을 위하여 수목 식재가 제한되며, 준공시 소방점검 의견에 따라 식재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수목의 생육을 위해 수목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면적, 시설물 및 포장의 형태, 색체, 마감, 패턴, 위치, 규격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1층에 개방형라운지 와 지상38층 스카이라운지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인허가 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옥상에 조경공간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인접단위세대에는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층 및 피난안전구역(23층)에는 소화수조 및 펌프, 제연휀 등 시설물이 설치되므로, 인접세대에서는 이에대한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옥상에 조경공간 계획에 따라 수전이 설치될 경우(개수대 등), 동절기 또는 동파가 우려되는 환경에서는 사용 제한 및 드레인 작업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하며, 동파 시 세대에 공급되는 수도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기에 노출되는 수전도 동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단지 내 휴게시설, 관리시설, 옥상조경 등의 조경시설 인접 단위세대에는 소음, 진동, 시야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 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설치 및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으므로 견본주택 내 모형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볼라드등, 수목투사등, 포인트조명 등 각종 옥외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 단위세대는 빛의 산란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경관조명의 위치, 사양 및 수량 등은 실시설계 및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수목 고사, 시설물 및 포장의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정화조는 인허가,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일부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덕트 및 환기시설이 해당동의 단위세대 인근 공용부PD 및 외벽, 옥상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계 후 유지관리 및 주기적인 청소는 관리 주체의 의무임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기능상실, 냄새, 환경 민원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주동 외벽 중 일부구간에는 BIPV가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위치 및 색상, 사양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 본 단지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은 128대, 오피스텔의 주차장은 108대로 구성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은 45대로 별도 계획 됩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지하 2~ 지하 4층 주차장에 설치(급속 3대, 완속 6대)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일부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공용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양화진길에 위치하며, 인근 저층 단위세대은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3층~지하 6층 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3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진출이 불가함으로 견본주택에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주차장에는 결로, 화재, 분진 등으로 인한 환기 및 예방의 목적으로 환기덕트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2층의 주차장 주출입구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3층 이하는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각동 지하출입구 편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위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바닥마감은 설계에 배수 구배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 마감은 설계에 배수 구배가 반영되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기계실 등 결로발생 확률이 높은 공간에 대해서는 추가 하자 방지를 위해 천장과 벽, 바닥의 도장 등 마감공사를 미시공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차장 이용 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관리 규약에 의해 주차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지하 2층 주차장을 주간에는 비주거 시설 이용자가 사용하며 야간에는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 부대복리시설 관련

-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집기, 비품, 운용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등은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용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통신시설물,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운용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입주자)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한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내 주민운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이용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 혹은 이용객의 단지 내 진입이 불가피하며, 향후 분쟁발생 시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관리규약에 의해 분쟁사항을 조정해야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자전거보관소

  ② 복리시설 :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 라운지, 스카이라운지,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계획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주민운동시설 : 지하2층
  - 라운지 : 지하1층
  - 스카이 라운지 : 지상38층
  - 관리사무소 : 지하1층
  - 펌프실, 저수조(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용) : 지하7층

- 주차장 램프 : 양화진로쪽 입구

- 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미확정이며, 추후 개별 분양으로 운영되는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그리스트랩 등을 설치(입주자 부담)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인접 점포 및 단위세대에서는 냄새,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지상1~지상3층은 바닥-석재 및 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페인트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각 실의 천정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 등)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본 시설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대지 남측 사회복지시설은 마포구 기부채납 시설입니다.
- 입주자와 상가의 주차는 지하층에만 가능하며, 인허가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은 지하 3층으로 결정된 바,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

- 견본주택 건립단위세대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42타입 단위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달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세대인 40A, 40B, 45, 57은 건립 세대인 42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 형태 및 공간 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달로그 등)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4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확장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타입별/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실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단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성능등급은 표준실험동 등에서 관련기준 절차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사후확인제도, `22.8.4일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건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준용)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건축법 시행령」제46조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을 준수하여 설치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실은 화재 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에는 피난 동선에 방해가 되는 다른 물품을 적재하실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단위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세탁기 설치공간의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시 세탁기 용량에 따라 도어를 탈거해야 합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친환경 스톤플로링,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탁기 설치공간/발코니/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등)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 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단위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욕실, 발코니, 세탁기 설치공간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단위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엔지니어드스톤의 제조사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석재, 타일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특성상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건립타입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바닥재인 마루바닥재의 구성 부재 중 심재(코어)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됩니다.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우물천장 높이 및 크기, 내부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일부 제품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단위세대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에 따라 침실 창호 크기가 다르게 설계 되었습니다.7858
- 주방 선택(기본/옵션)에 따라 가구의 형태와 규격,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 표면재의 무늬,패턴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가 시공되는 부위의 바닥은 일부 난방 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가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가구변형을 막기위해 가구도어에 보강대 설치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싱크대 하부에 설치되는 물끊기 홈은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길이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디딤석은 분할시공 될 수 있으며, 바닥단차는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디딤석과 만나는 거실바닥재에 재료분리대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바닥타일의 나눔부위에 따라 평활도가 고르지 않을 수 있으며, 패턴나눔(메지) 부위가 변경 또는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내부에 가스계량기 및 배관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이 협소합니다.
- 가스계량기 및 배관 및 기구류의 세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과 문틀 사이의 단차는 욕실 바닥 구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타일(기본, 옵션)나누기, 패턴, 메지와 실리콘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단차 부위는 인조석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며, 벽타일 시공 시 PVC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의 바닥, 벽, 상판의 재료분리대의 자재, 형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세탁기/건조기 설치 시 견본주택에 전시된가전과 상이하게 돌출될 수 있으며,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소유의 가전제품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호 본 공사 시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커튼박스 내부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단위세대 내 화장실 벽은 습식공법(조적)으로 시공되며, 따라서 단위세대 공급면적이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 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창호 관련
- 외부 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단위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색상,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외창호는 PL창 THK43로이삼복층유리(하향식피난구실에는 로이복층유리)가 적용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난간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창호가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기계,전기,통신 설비 관련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의거 단지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4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해당없음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지상층(지상13층 TPS, 지상30층 TPS) / 지하층(지하1층 TPS)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방범과 안전, 편의성을 위해 설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내부에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지상 개폐기, 패드, 전주, 변압기, 맨홀 등)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맨홀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특정 단위세대은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고, 시설물의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옥탑층은 주동 측벽상부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 배치와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단위세대은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상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인접한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단위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 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 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이사 단위세대의 전용 이용 또는 일부 시간대 혼잡으로 인하여, 대기시간 지연 및 사용 불가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일정 기간 동안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인수인계 후 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 등은 각 동의 층수 및 단위세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동 등의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우수조/정화조 등이 설치되어 장비의 정기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배연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에 초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등의 D.A, 부대시설의 실외기 시설,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 등에 의해 일부 특정 단위세대은 조망권, 일조권 및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내에 전기차충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인허가 사항이나 주차장의 구조 등에 따라 위치 등이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전기차충전설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 대수에 전기차충전구획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차면은 실제 주차 용도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시설물(전기차충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경관조명, 옥외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제습장치, 냉난방기,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상부(옥상, 외벽 등)는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설비 통기 배관, 발전기 연도, 위성 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조망 간섭, 야간조명의 영향, 눈부심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해 일부 특정 단위세대은 침해를 받아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설치 용량 및 수신 감도 등에 따라 위치, 개소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상부 옥탑구조물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에너지관련 검토에 따라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무인택배함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인허가 내용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무인택배함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등의 천장 내부 공간이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4~11층 복도 발코니에는 구조대가 설치되며, 해당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차제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우수저류조 등 기부채납시설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음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기계,전기,통신 설비 관련
- 단위세대 분전반(「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설치)과 단위세대 통신 단자함(「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별표 3의 주)3」에 의거 단위세대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의해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신발장, 세탁실, 베란다, 발코니 이외의 장소)에 설치)은 견본주택에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거실 벽면에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전기 마감재(단위세대 분전반, 단위세대 통신 단자함, 월패드, 조명기구, 배선기구, 콘센트 등)의 설치 위치, 수량 및 사양은 발코니확장, 추가 선택품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하는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방문자 확인,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단위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조명기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단종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태 및 모양 포함)
- 일반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 등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조명은 일괄소등이 불가능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단위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내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구의 타입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 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수량,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급수, 급탕 분배기는 유지관리를 위해 본 공사시 설치 층수 또는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욕실 선반,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 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난방코일이 시공됩니다 (단, 세면대하부, 샤워부스, 양변기부스 제외)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온수분배기 등)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전기쿡탑 설치에 따라, 주방에 가스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레인지후드 내부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조작부 및 감지부 등은 천장 및 가구, 제품인근에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차제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 및 보일러실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난방구간에 설치되는 수전 및 배관, 스프링클러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환기장치의 환기덕트 및 주방,욕실 배기덕트 내부에 실내.외 온도차에 인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정내부에 환기설비(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설치됨에 따라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실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주방 배기 및 욕실 배기는 당해층 직배기로 설치되며,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기는 거실, 침실 등을 경유하며 단위세대의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므로 이에 따른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배기는 거실, 침실등을 경유하며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므로 이에 따른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주방,욕실 배기구 및 세대환기 급.배기구의 위치는 거실, 또는 침실 전면으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내부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수납공간이 협소해지며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가 거실 또는 침실 등과 면한 벽체에 설치되므로,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일부타입은 덕트 및 배기구가 침실 및 거실구간에 설치됨에 따라 커튼박스의 깊이나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 및 덕트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에어컨 매립배관은 천장형 2개소(거실,침실)가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에는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발코니확장은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여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능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바랍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라인은 본 공사시 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 간 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계약자는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의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를 임의로 개별 변경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지정일 만료일 이후 일정기간은 관리비 등이 다소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변경 등 관련 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 설계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창호 공사, 발코니 확장 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피난구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Ⅶ 기타 주요사항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 (주거1+등급)
- 녹색건축 예비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사회복지시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서기간
제 01282025-104-0001600호	₩ 175,932,9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양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제1조), 보증이행 대상이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제2조), 보증사고(제4조)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 (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시행계획인가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고지사항

• 본 공급물건은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신탁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디오로디엔씨,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및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하고 분양계약(공급계약)의 체결로써 다음 사항 전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디오로디엔씨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 본 공급물건은「신탁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부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디오로디엔씨와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 해지되는 경우, 분양계약(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본 사업상 시행자(사업주체)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인 ㈜디오로디엔씨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공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건축물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시 수분양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단, 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
-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근거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한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본 내용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 공급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외장 자재의 수급여건, 현장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사전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게 현존하는 분양계약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디오로디엔씨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구 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비고
회사명	주식회사 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다우티이씨	주식회사 호성엔지니어링	-
감리금액	(₩ 2,565,200,000-)	(₩ 382,800,000-)	(₩ 22,000,000-)	(₩ 660,000,000-)	-

■ 시행사, 시공사, 위탁사 및 분양대행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디오로디엔씨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	㈜지안씨앤디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82, 1113-25호 (별내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신천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11, 6층 608호(청담동, 원일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7125720	110111-7745883	110111-0274699	110111-819012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자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190082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목·용도·규모
  ①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1-49번지 일원
  ② 지목 : 대
  ③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④ 규모 : 지하7층 ~ 지상 38층, 1개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일반상업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한강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입주자모집공고 게재 신문 : 2025년 12월 08일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 및 신문사 사정에 따라 신문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홈페이지 : https://www.lavieum.com
■ 문의전화 : 1533-1195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및 견본주택 약도

라비움 한강 청담 갤러리 견본주택	라비움 한강 현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19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49번지 일원